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1. 2. 22.

발 의 자:홍기원·강준현·고영인

김교흥 · 김회재 · 문진석

박상혁 · 조오섭 · 조응천

진선미 · 홍정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통해 새로운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이 부동산투자회사에 출 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과 같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법률 제 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및 「공 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공분양주택"으로 한다. 제27조 중 "50배"를 "60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	제9조(기금의 용도) ①
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임대주택</u> 의 공급을 촉진하기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
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u>공분양주택</u>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제27조(보증의 한도)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	
기자본의 <u>50배</u> 를 초과하지 아	<u>60배</u>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